

공 고

1. 예정된 처분의 내용 :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법령 : 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상 및 이용자
①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이용자
②최근 3개월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(실적없음) 이용자

사서함	이용자 성명
제24호	이*길
제309호	김*환

4. 게시 기간 : 2022. 9. 14 ~ 2022. 9. 27
5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있을 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 내 우리국 영업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연락처: 042-250-7066, Fax: 042-256-9851)

대전우체국장